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추은희 의원 외 24명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추은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 . .

발의자: 추은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의원(25명)

1. 제안이유

- 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기계설비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안 제2조~제3조)
- 나. 시장 및 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제5조)
- 다.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련한 사항(안 제6조)
- 라. 준용 규정(안 제7조)

3. 조 례 안: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기 타: 해당없음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공사업”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인공구조물 포함)으로써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
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
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
사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공공건축
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 기계설비공사업자는 업자 간 불필요
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공사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
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
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 발주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

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15. (생략)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3.>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제2호거목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라. (생략)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타. (생략)			
파. 기계가 스설비 공사업	1) 기계설비 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 작물에 급배수·위생·냉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 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 는 급배수·환기·공기조 화·냉난방·급탕·주방· 위생·방음·방진·전자파 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 스템에어컨(GHP·EHP)공 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 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 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 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 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 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생략)		

하.~거. (생략)			
---------------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난방공사(제1종)
 - 나. 난방공사(제2종)
 -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최소영(054-480-5424)